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배움, 나눔, 키움을 실천하는 함께 행복한 학교

학교 홈페이지 http://www.sintaein-e.es.kr

**5** 571-214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2020도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O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 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중 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 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O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 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제20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24. 4. 19.

신 태 인 초 등 학 교 장